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 〉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97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2204697)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19조 제1항제6호, 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7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3
1) 국토교통부	13
2) 한국온라인쇼핑협회	14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 등(안 제 19조제1항제5호·제7호, 제19조의6, 제46조제1항)	16
가. 개정안의 내용	16
나. 검토의견	18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23
1) 국토교통부	23
2)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3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220469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10. 15.
3. 회 부 일 : 2024. 10.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개 배달업체에서 1,708건의 산재신청이 있었는데, 질병 9건을 제외한 1,699건이 사고였음.

산재신청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이더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배달업체에서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이에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며, 유상운송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

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19조의5·제19조의6 신설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19조제1항제6호, 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종사자등¹⁾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상운송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만일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위반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취소 사유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규정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안 부칙 제2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법률 제20043호, 2024. 1. 16., 일부개정] [시행일: 2025. 1. 17.]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생략) 6. <u>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 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u> 7.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현행	개정안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의3. (생략) <u><신설></u> 10. ~ 14. (생략) ②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 ----- -----. 1. ~ 9의3. (현행과 같음) <u>9의4.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u> 10.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5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²⁾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나 이륜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이 사망·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와 타인의 재물의 멸실·훼손을 유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보험에는 개인이 생활·취미 등에 활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정용 보험, 대가를 지급받고 배달·퀵서비스 등 영업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유상운송보험 등이 있음.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이 아닌 가정용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개인이 온전히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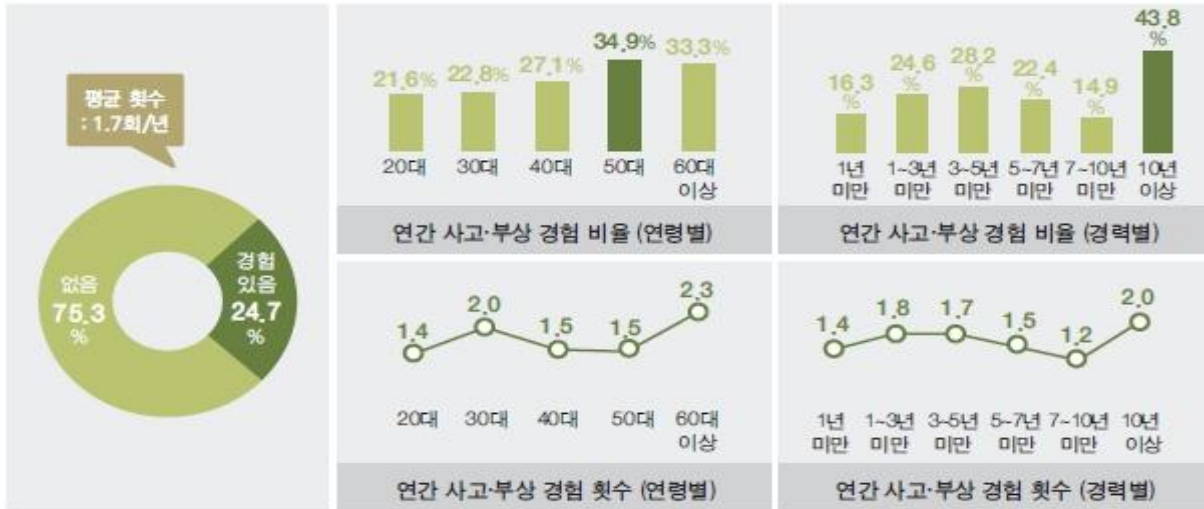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업 배달종사자는 약 23만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유상운송보험 가입대수는 약 9.8만대로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40% 내외에 불과하다는 설명임.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³⁾ 결과에 따르면 배달대행 종사자는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약 25%에 달하였고, 이는 연평균 1.7회 사고·부상을 경험하였다는 것이나, 이처럼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소화물배송대행종사자와 국민의 피해를 구제함에 있어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실정임.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배달대행종사자의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 】



【 그림 3-35 】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 비율 및 횟수 (배달대행 종사자)

자료 :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실태조사 p.92

이에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인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하여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취지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유발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⁴⁾

4) 다만, 일부 업체의 경우 해당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규정이 인증사업자에게만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인증을 유지할 실익이 없거나 낮으므로 향후 인증 포기나 이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⁵⁾에 따를 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택시·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해당 자동차들의 경우 개별 법률⁶⁾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가 필수적임에 따라 영업용 보험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음.

한편,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 결과 배달대행 종사자의 일자리 개선 요구사항으로 유상운송보험 보험료 인하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19.2%에 이르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는 40세 기준 연간 200만원대에 이르는 등 현재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유상운송보험의 높은 보험료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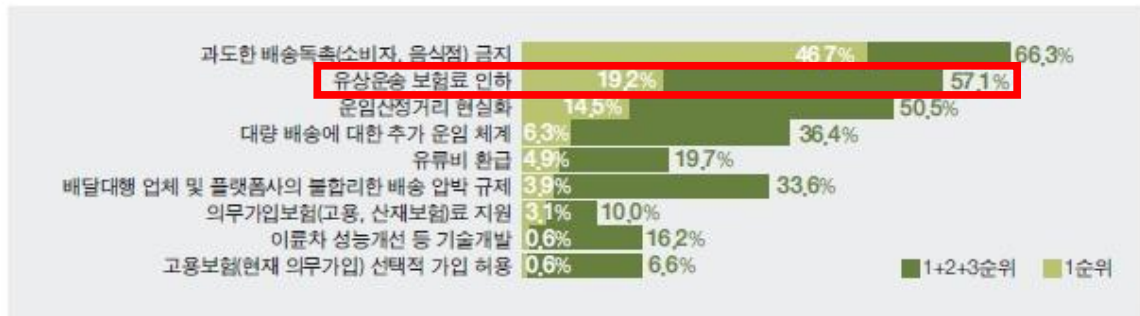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배달대행종사자의 배달대행 일자리 개선 요구사항 】



【 그림 3-32 】 배달대행 일자리 개선 요구사항

자료 :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실태조사 p.91

이에 안 제19조의5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부담 및 그에 따른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해서 별도의 보험료 지원을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은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9조의5제2항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미가입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해서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와 새로이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서 계약을 이미 체결한 자에 대해서도 유상운송보험 미가입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참고로, 안 제51조제1항제9호의4는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 제19조제1항제6호는 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인증 취소로 규정하고, 안 제51조제1항제9호의4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7) 참고로, 2025.1.17. 시행예정인 동법 제19조의2제2항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가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운송 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일: 2025. 1. 17.]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른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안 제19조의5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이후 미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의무(안 제19조의5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계약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질 것인바,

가입여부 확인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인증 취소 등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유사한 수준의 의무 위반으로 보이는바 과태료 부과 사유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40% 내외로 추정되어 사고 발생 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와 계약한 인증사업자의 인증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국가 등이 종사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유상운송보험 가입은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사업주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바, 개인의 법적 책임 이행 여부를 근거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고, 개정안에 따른 확인 의무 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나 그 영업점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비인증 사업자나 그 영업점에도 많은 배달 종사자가 소속된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실효성이 미흡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단순 부업으로 단기간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수의 단기 종사자, 일시적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 전업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 단계의 배달종사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유상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제한 등 부작용이 우려됨.

한편, 이륜차 보유자에게 부과된 법률적 의무의 이행여부를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만일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수만 명의 라이더에 대한 유상운송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인력 및 행정 등의 제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재정 지원이 필요함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 등(안 제19조제1항제5호·제7호, 제19조의6, 제46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로 하여금 시·도
지사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
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이를 이수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위반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의 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임.

또한, 현행법 제19조의4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
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
도록 하고 확인 결과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경우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현행	개정안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u><신설></u>	6. (생략)
<u><신설></u>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②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③ <u>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u>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 ----- --<u>시·도지사</u>----- -.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최근 4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16,000건 이상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1,900명이 사망하였으며,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대행 종사자는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약 25%에 달하였고, 이는 연평균 1.7회 사고·부상을 경험하였다는 것임.

【 최근 4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전체	사고건수 (건)	209,654	203,130	196,836	198,296
	사망자수 (명)	3,081	2,916	2,735	2,551
	부상자수 (명)	306,194	291,608	281,803	283,799
이륜차*	사고건수 (건)	21,258	20,598	18,295	16,567
	사망자수 (명)	525	459	484	392
	부상자수 (명)	27,348	26,617	23,469	21,318

* 사륜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배달대행종사자의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 】



【 그림 3-35 】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 비율 및 횟수 (배달대행 종사자)

자료 :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실태조사 p.92

또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륜차의 법규위반이 35만 건 이상 발생하였고⁸⁾, 2023 생활물류실태조사에 따르면 27.4%에 달하는 답변자가 교통법규 위반을 배달대행 업무 중 사고·부상의 원인으로 답변하는 등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대행 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이륜차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임.

【 2018~2022 이륜차 법규위반 건수 】

[표 1-4] 연도별 법규위반 건수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이륜차 법규위반 건수	247,039	280,993	356,344	413,605	351,685	9.2%
전체 법규위반 건수	15,984,584	16,492,816	16,120,914	17,913,306	22,362,563	8.8%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보고서

자료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2024)

【 배달대행 업무 중 사고·부상 원인 조사 결과 】



[그림 3-36] 배달대행 업무 중 사고·부상 원인

자료 :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실태조사 p.92

이에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받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이를 이수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위반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8)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 2024.8.30. p.5

인증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⁹⁾

참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¹⁰⁾에 서도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 다만, 일부 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노무제공자로 정의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가 이미 사업자에 부여되고 있고, 일반 자동차에 비해 이륜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기반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정 조건을 갖춘 안전교육의 이수를 종사자 자격의 요건으로 보는 것은 현실성이 낮으므로 사업자, 지자체 등의 자발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독려하며 점진적인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안 부칙은 동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시행일에 대한 유예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로 하여금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도 교통안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한다면 시설 및 인력 상황에 따라 교육 이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관련한 안 부칙 제2조와 같이 교육 이수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19조의4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미비한바,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미비를 해소함으로써 운전자격을 갖춘 자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현재 전체 배달 종사자(전업 23만명, 부업 약 40만명)의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자체 소관 교육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 설치 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와 계약한 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다만, 운전 미자격자와 계약한 인증사업자의 인증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임.

2)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배달 종사자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어 본 개정안 제19조의6 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등 별도로 달리 구성할 필요성이 낮고,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배달 종사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0